#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685 발의연월일: 2025. 3. 6.

발 의 자: 박성민·김성원·박덕흠

한지아 · 서일준 · 백종헌

정동만・김승수・구자근

김희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 법률 제 호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0조(이행강제금) ① • ② (생 제10조(이행강제금) ① · 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 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체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된 이행강제금을 국세 체납처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 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 <삭 제>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 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 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 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 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 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 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 <삭 제>

·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